

75세 할머니 또 이혼소송에서 패소

“죽기전에 ‘노예’ 벗어나고파 이혼 원한다”

할머니들이 마지막 생을 ‘인간답게’ 살고자 하는 절규가 또 한번 짙어졌다. 지난 해 9월 칠순의 이시형 할머니가 아흔살의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해로하시라’란 판결로 이를 기각 시켜버린 사법부가 1월 4일 김창자 할머니(75)가 남편 A씨(83)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 2심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것. 서울고법 민사10부(재판장 박인호 부장판사)는 A씨가 결혼 초부터 가부장적 권위로 아내를 부당히 대하고 상당한 돈을 벌면서도 최소한의 생활비만 쥐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혼인 당시의 가치 기준과 남녀관계 등을 고려해 볼 때

(할아버지의 부당한 대우가) 52년간의 결혼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한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애매모호하고 설득력이 없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9일 김 할머니가 1천2백만원에 전세 들어 있는 송파구 석촌동의 한칸짜리 방을 찾았다. A씨와의 사이에 1남3녀를 둔 할머니는 이번 소송으로 둘째딸이 철저히 아버지 편에서 서서 반대증언하는 아픔을 겪어야 했다. 현재 큰딸 이봉순씨(52)와 세째 아들 이지희씨(49)가 어머니를 위해 뛰고 있고, 막내 딸은 할머니측에 따르면 아버지의 폭력으로 제대로 결혼생활에 적응 못해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상태다.

1심서 승소, 항소심서 패소, 대법원 상고준비 중

50여 년 함께 산 남편은 “결혼 6개월 때부터 폭언과 구타 일삼아”

재산형성기여도 50% 이상, 8억여 원의 재산분할 청구소송 내

할머니에 따르면, 결혼생활 50여 년은 그야말로 노예와 닮았고 한순간도 기쁨이 없었던 인고의 세월이었다. 일본의 한 여자전문대학에서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한 후 교사생활도 했던 할머니는 친정아버지가 당시 운수업을 하던 A씨를 술자리에서 만나 즉석에서 결혼시킬 것을 결심해 결혼하게 됐다. 그러나 결혼생활은 처음부터 삐걱거렸다. 할머니는 초혼인데 반해 A씨는 세 번째 결혼으로 이미 첫번째 결혼에서 8세 된 아들을 하나 둔 상태였다. 첫 부인은 무식하다고 쫓아냈고, 두번째 부인은 아이를 낳다 죽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당시 23세로 노처녀 측에 들었던 할머니는 오랜 일본생활로 ‘한국 실정을 너무 몰라’ 이런 A씨의 허물을 감수해야 하는 줄로만 알았다. 그러나 결혼 6개월 때부터 남편의 폭언과 구타가 시작됐고 남편의 강요로 교사생활도 못하게 돼 시시때때로 도망갈 기회만 노리게 됐다. 남편은 아이들에게까지 사정없이 채찍을 휘둘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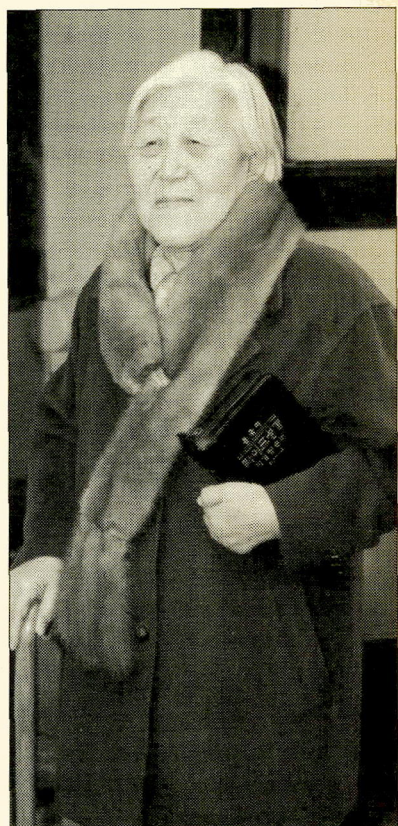
그런 와중에도 6.25 때 자신이 모아둔 돈으로 삼립동의 땅을 사 4층짜리 건물을 올리며 기쁨을 마셨다고, 69년 행당동의 104평짜리 집으로 옮겨와서는 집터에서 만화가게, 담배가게, 하숙, 리어카보관소, 기름장사 등을 하며 생

활을 안정시키는데 최선을 다했다.

물론 이렇게 해서 축적된 재산 역시 현재 모두 할아버지 명의로 돼있다. 따라서 할머니는 현재 할아버지의 18억원 상당의 재산중 자신의 기여도가 50% 이상이라며, 위자료 3천만원을 포함해 8억여 원 상당의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냈다.

할머니의 노후 삶은 10여 년 전부터 부쩍 심해진 남편의 의처증, 천장·마루 등지에 돈을 숨겨놓고 찾지 못해 ‘돈 내놓으라’고 시도 때도 없이 다그치는 남편의 폭언, 양말, 사탕까지도 손수 사면서 월 2만5천원으로 생활을 해결하라는 남편의 억지, 옷 벗고 돌아다니기 등 근래 생긴 남편의 치매증상으로 지옥과 다름없는 생활이었다.

그동안 비교적 여유있게 사는 둘째 딸이 방을 얻어주며 더이상 비참하게 살지말고 나와살라고 해도 이혼을 결심하지 못했던 할머니가 이혼을 결심하게 된 계기는 97년 6월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절도죄로 고소했기 때문. 아들 명의로 사둔 부동산이 팔려 잔금 5천3백만원을 그 자리에 있던 할머니가 우연히 손에 넣게됐다. 이를 뒤늦게 알게 된 할아버지가 절도죄로 고소를 했다가 이혼소송을 낸 후 다시 이를 취하하자 이번엔 그 두달 후 할머니가 이혼소송을 낸 것. 지난 해 6월 열린 1심에선



▲ 현재 1천2백만원 단칸 셋방에 살고 있는 김창자 할머니는 판결결과 이혼소송 패소로 고통을 겪었지만 신앙의 힘으로 하루하루를 버텨가고 있다.

할아버지의 가부장적 억압과 국립정신병원이 내린 의처증 진단 등 할머니측 주장이 90% 받아들여져 승소했다. 재미있는 것은 당시 재판장이었던 김선중 부장판사가 9월 칠순 할머니·아흔 할아버지 이혼소송에선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는 점.

할머니와 함께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찾아와 용기를 얻고 이혼소송을 돕게 된 큰딸 이봉순씨는 “내가 우리 엄마 이혼소송의 주동자”라며 “한 인간은 행복해야할 권리가 있기에 그 권리를 찾고자 하는 것으로 이 사건을 받아들여줬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그는 자라면서 아버지의 구타보다 더 참기 힘들었던 것이 ‘기집은 백명이라도 버릴 수 있다’고 되뇌이던 남존여비 사상이라며 1심에서 아버지가 “나는 불쌍한 놈이니 이번엔 순종 잘 하는 여자 얻어 살게 해달라”는 탄원서를 재판장에게 냈다고 전하며 씁쓸히 웃는다.

할아버지와의 결혼생활 내내 혈압약을 손에서 놓지 못했던 김창자씨는 할아버지와 떨어져서나 거짓말같이 혈압약을 입에 안대게 됐으며 “덥으로 사는 기분”이라고 힘없이 웃었다.

(글 박이은경·사진 민원기 기자)



▲ 김창자 할머니가 이혼소송을 결심하기까지는 큰딸 이봉순 씨의 격려가 큰 힘이 됐다. 현재 이씨는 어머니의 ‘대변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최은희 변호사(할머니측)

담당변호사 인터뷰

황산성 변호사(할아버지측)

“쥐가 고양이 돌볼 수 있나”

-할머니가 왜 할아버지와 꼭 이혼해야 된다고 보는가.

“세간에선 늙고 병든 남편을 어떻게 버릴 수 있겠느냐고 이번 판결을 ‘아름다운 판결’로 보는 이들도 있다. 할아버지는 평생 폭력남편이었고, 말년엔 아내인 할머니를 절도죄로 두번이나 고소할 정도로 의심이 많았다. 의처증과 포악한 성격을 ‘장애’로 보았다면 재판부에 되묻고 싶다. 쥐가 어떻게 고양이를 돌볼 수 있겠느냐고, 더구나 항소심 후 알게된 사실이지만, 할아버지를 돌봐줄 50대 젊은 할머니가 생겼다는 사실을 들었다.”

-일부에선 할아버지의 철저한 근검절약이 좀 지나쳐 이런 사태에 이르게 했다는 의견도 있는데.

“92년 다리를 다쳐 인공뼈를 끼운 대수술을 한 할머니의 병원치료비조차 안대주고, 월 5백만원씩 들어오는 집세는 할아버지 혼자 다 챙기면서, 2만5천원으로 한달을 살라니 여자는 늙으면 밥만 먹고 살라는 말인가.”

-항소심에서 가족 간에 결코려운 증언이 나왔다고 하는데.



“둘째딸과 며느리(전처 아들의 부인)가 92년 58세의 나이로 작고한 전처의 아들과 할머니와의 불륜관계를 증언했지만, 워낙 터무니없는 주장이어서 재판부에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같다. 아마도 할아버지가 둘째딸에게 6억5천만원 상당의 빌딩을 가동기해주는 등 재산상으로 화유한 것 같다.”

-이번 판결에 대한 의견은.

“한마디로 재판부의 판결이 완전히 헌법에 위배됐다. 할머니에게만 이혼사유를 엄격히 적용해 남녀노소에 따라 ‘차별적’ 적용을 한 것 아닌가. 남편이 늙어서 불쌍해졌으니, 그 남편으로 인해 젊어서부터 불쌍했던 할머니는 늙어서도 계속 불쌍하게 살다가 죽으라는 얘기밖에 더 되는가. 대법원 상고에서도 기각되면 헌법재판소까지 갈 결심이다.”

김창자 할머니의 변호를 맡고 있는 최은희 변호사와 남편 A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황산성 변호사의 변론을 살핀다. 사회이슈화되고 있는 ‘황혼이혼’ 소송을 맡은 양쪽 변호사 모두 여성변호사들이어서 더욱 더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해 9월 칠순의 이시형 할머니의 이혼소송의 경우, 남편인 아흔살의 B씨가 평생 모은 재산을 일방적으로 1대에 가중해 재산의 사회환원적 의미에 초점이 모아진 반면, 이번 김창자 할머니의 이혼소송에선 치매증세와 의처증이 있는 ‘병약한’ 남편이라는 데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여성인권 이슈될 수 없다”

의지하고 살아야 아름다운 결말 아닌가.”

-여성계에선 이번 판결을 여성인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생각하는데.

“이 문제는 그렇게 볼 사안이 아니다. 할아버지는 그나마 자존심이 있어 절대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지만, 할머니는 부끄럽게 생각하고 가만히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가정의 치부만 드러냈을 뿐, 절대 여성인권으로 이슈화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번 판결에 대한 의견은.

“사실 이혼소송까지 갈 사건도 아니다. 재판부의 판결은 합당하다. 우리나라 이혼소송에선 기본적으로 ‘유책(有責)주의’(원칙적으로 결혼파탄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만 이혼 인정)를 채택하고 있다. 다시 말해 ‘파탄주의’(상대의 잘못을 따지기보다 객관적으로 결혼유지가 무의미할 경우 이혼 인정)를 따르고 있지 않다. 미국의 경우, 파탄주의로 이혼판결을 내리다보니 가정해체의 위기감이 높아져 일부 주에선 우리나라처럼 유책주의를 가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할아버지의 평소 언행이 이혼까지 갈 정도는 아니라고 주장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폭언이 좀 심하나 구타까지는 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또 최소한의 생활비만 준 것은 좀 딱하다고 생각하지만, 근검절약해 가족을 먹여살리고 자식을 공부시키며 재산 모으려면 그럴 수도 있지 않겠는가. 무엇보다 할아버지의 의처증과 치매증세의 원인제공자는 할머니인 것으로 알고 있다. 여기서 밝힐 수는 없지만 전처 아들과의 불륜증언을 말하는 듯) 결혼생활의 모든 문제가 할머니로부터 불거져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면 더더구나 양쪽이 합할 수 없는 문제가 아닌가.

“그건 아니다. 양쪽이 모두 결혼생활에 잘못을 범했으니, 생이 얼마남지 않은 시점에선 화해하고 서로